

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7]

선박처리장의 시설·장비기준(제73조제3항 관련)

1. 총톤수 5톤 이상의 작업선 1척
2. 배수펌프 2대
3. 절단기 10대
4. 50톤급 이상의 크레인 1대
5. 33m² 넓이의 사무실